

2001. 6. 26
제107회 서구의회
제1차 정례회

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총 무 위 원 회

(전 문 위 원 장 재 영)

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2001. 1. 1일자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(제2조 제2항)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2001. 1. 1일자로 시행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. 종전에는 서구토지평가위원회의 주무부서가 도시국 산하의 지적과였으나, 현행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총무국 산하 종합민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.

따라서 관련사항의 개정은 종전의 규정형식과 같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무부서의 직상급부서의 장인 총무국장으로 직접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,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 본 위원회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시간소모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처럼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특정하지 않고, 해당 위원회의 주무부서의 직상급부서의 장인 주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.